

삼육대학교 KREN 회선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4. 5.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참가자격	1
5. 사업범위	1
 II. 제안요구사항	 2
1. 주요내용	2
2. 제안평가내용	3
3. 사업시방서	3
4. 제출서류 (검수 후)	8
 III. 사업자 선정	 7
1. 사업자 선정절차	7
2.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10
3.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0

I. 사업개요

1. 사업명 : 삼육대학교 KREN 회선사업자 선정

2. 사업목적

- 삼육대학교 유무선 인터넷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 충족을 위한 회선 용량 증속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선사업자(통신사) 투자장비를 통한 교내 무선 인터넷 IT 인프라를 개선한다.

3. 사업기간 : 2024. 5 ~ 2030. 4 (6년)

* 투자장비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참가자격

- 교육전산망 위탁운영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국계령 - 제5장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자 또는 법정관리(워크아웃 포함) 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함.
- 최근 2년 이내 재무제표상 자본금 잠식이 없는 사업자.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자격기준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본교의 선정방식 및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는 사업자.
- 일체의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5. 사업범위

- 삼육대학교 유무선 인터넷 회선 계약

구분	구 간	속 도	비고
삼육대학교 캠퍼스	유선 인터넷회선	1Gbps	교육전산망
	무선 인터넷회선	3Gbps	교육전산망
	기숙사	500Mbps	인터넷전용회선

- 회선 증속에 필요한 장비 교체 및 라이선스 증설
- 노후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증설 등 교내 IT 인프라 개선 및 고도화
- 사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에 필요한 테스트 및 교육, 잡자재 포함

II. 제안요구사항

1. 주요 내용

- 가. 교육전산망 위탁사업자에 따른 정량 평가 및 회선 품질 평가는 제외하며,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세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1)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회선 요금은 상세산출내역(회선별 요금)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 나.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그 외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 요청 사항 및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후순위 사업자와 협상을 시작한다.
- 다. 제안 내용은 교육전산망 정책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본 사업에 포함된 회선 모두 교육 전산망 SLA 기준을 따른다. 제안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 교육전산망 외 회선에 대해 다른 SLA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라. 본 사업에 포함된 회선은 회선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마. 서비스 개통일은 계약 후 3개월 이내로 회선 테스트 및 안정화를 마쳐야 한다.
제안사는 본교가 지정한 네트워크 장비에 회선 서비스를 연동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회선별 인입 경로 및 장비, 연동 구성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2) 제안사는 협상 기간 내 일정계획표(회선 작업, 장비 연동, 테스트 및 안정화, 투자 장비 구축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 개통 및 장비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는 후순위 사업자와 협상할 수 있다.
- 바. 제안사는 투자장비를 제시하고, 투자장비 구축기간 내 본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H/W, S/W, License 등)
제안사는 투자장비에 대한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투자장비 구축은 본교 통합운영관리 용역사업 내 네트워크 또는 보안장비 협력사를 통해 진행하고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장비 사용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안사가 별도 업체를 통해 구축 시 본 사업 기간 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1명 상주인력 제공), 24시간 365일 비상연락체계, 본교 통합운영관리 용역사업 협력사들과의 공조 방안, 해당 업체의 유지보수 실적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포함 내용

부문	항목	내용
사업 수행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대상 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 분석의 명확성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최신성,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현황 ○ 수행조직과 업무분장의 타당성
	일정계획	○ 일정 및 기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회선 및 장비 연동, 테스트 및 안정화, 투자장비 구축 ○ 정상적인 서비스 개통
기술 부문	회선 요구사항	○ 회선별 이중화 구성 및 운영 방안, 전송장비 구성 ○ 회선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프로세스 ○ 장애 확인, 진단, 보고의 신속성 ○ 회선 서비스 품질 보장의 적정성 및 타당성(회선별 SLA) ○ 품질 보장(SLA 적용) 절차
투자 부문	투자장비	○ 투자장비의 장비 적정성 ○ 투자장비의 특/장점 ○ 기존장비와 투자장비의 비교 ○ 투자장비 제조사의 안정성
	투자장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장비의 납품, 설치 및 보증,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 본교 유지보수 협력사들과의 공조 방안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24시간 365일 비상연락체계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책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3. 사업 시방서

본 시방서는 삼육대학교(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을”이라 한다)간 『삼육대학교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사업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가. 적용 범위

- 1) 본 시방서는 계약 조건과 사업 수행 방안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장비 구축, 운영에 적용한다.
- 2) 정보통신 장비 및 자재의 시험, 개통, 성능보장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의 공급과 설치 작업은 “을”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 3) 계약 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 4) 사업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서(협의사항 포함) 및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관계법령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터넷 회선 이용 관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전산망 정책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을”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한다. 본 시방서 내용과 “을”의 서비스 약관 및 교육전산망 정책 간에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항목들은 계약 시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본 시방서 관련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작업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나. 감독관

- 1) 감독관이라 함은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 원장으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 2) “을”은 본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3) “을”은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 1) “을”은 계약 체결 후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사업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의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현장대리인은 화재 및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 및 자재관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3)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라. 대금 지급

- 1) “을”은 계약 기간 동안 회선별 월간 사용료를 매월 청구하고 “갑”은 대외 지불 규정에 의거 1개월 내 지급한다.
 - a) 회선 사용료는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 b) 요금 변동 시 사전 공문 발송을 통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고지 및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변동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 복구가 지연되는 등 지체상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가 조치 완료될 때까지 교육전산망 SLA 정책에 의거 패널티를 부여한다. “을”의 장애보상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호 합의 과정을 거치되 “갑”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한다.
- 3)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된 회선 사용료 외에 장비 임대료 등의 별도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마. 장비 납품 및 설치 조건

- 1) “갑”은 “을”이 제출한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투자장비 품목(견적서, 물품규격서)을 “을”에게 제시하고, “을”은 제시한 품목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제시한 품목을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자장비 구축기간 내 납품 및 설치, 구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을”은 “갑”의 통합운영관리 용역사업에 포함된 네트워크 및 보안 협력 업체를 지정하여 투자장비에 대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3) 발주 및 납품 과정에 있어 “을”(발주사)은 납품/설치/공사/운영 업체(통합운영관리 용역사업 내 협력사, 파트너, 총판, 제조사) 외 관련 없는 업체들의 중간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중간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을”은 계약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작업 공정표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장비별 납품 및 설치일정, 출입을 위한 작업자의 신상명세, 물품 출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을”이 제출한 공정표에서 구간별, 공정별 작업순서와 일정 등의 내용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5) 본 작업은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고 호환성 및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6)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물품은 향후 5년간 단종 계획이 없는 최신 모델이어야 한다.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무선백본스위치, AP, PoE스witch는 동일한 제조사로 해야한다. 무선 백본스witch는 향후 트래픽증가를 고려하여, 100G이상 지원되어야 하며,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 해야한다.
- 7)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투자장비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갑"이 사용하고 자 하는 기간만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승인 없이는 "을"이 회수하지 못한다.
- 8) 대상 회선 전체에 대한 일/월/년 단위 사용량 및 실시간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RTG 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을"은 24시간*365일 회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 경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 계약 시 회선 모니터링 방안 및 체계, 연락처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교내 유무선 장비에 대한 Telemetry 표준 프로토콜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바. 납품 및 설치기한

- 1) "을"은 계약일로부터 회선 서비스 개통일 및 투자장비 구축기간 내 모든 납품 및 설치, 공사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갑"의 불가피한 사유(학사 일정 등)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 2) 납품 및 설치 완료는 해당 업무 및 서비스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품목별 설치 및 구축, 공사 세부 작업 방안, 세부 일정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조정하여 시행한다.
- 3) "을"은 계약 체결 후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장비의 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 공정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조정 요청 시"을"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사. 납품 및 설치 장비 특징

- 1) 본 사업에 납품 및 구축하는 장비는 제안한 수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장비 설치 또는 공사 등의 사용 자재 및 기기는 KS규격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규격품이 없을 경우 규격에 준한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도 빠짐없이 납품되어야 한다. 품목별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 4) "을"은 작업 시행 전 규격서와 물품의 부합 여부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물품 반입 및 반출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작업 및 현장 관리

- 1) "을"은 현장조사 및 설치작업, 관련시험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사업 조건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2) "을"은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납품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을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3) 기존 전산 장비와의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및 변경 작업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4) "을"은 구축 장비의 납품 및 설치 작업, 시험 및 성능 보증 등 작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책임져야 한다. "을"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한 사고 및 제품 결함, 기타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을"이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 5) 장비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파손이나 에러(시스템 전체 또는 부품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6) 장비 설치 중 "을"은 감독관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장비 설치 행위 또는 구축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시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며 기물이 파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 7) 본 사업의 모든 작업 및 시공은 본 시방서에 준하고 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8)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도중 취득한 정보들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시스템 시험 운용

- 1) "을"이 계약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갑"의 검수가 이루어진다. 회선 및 정보통신망, 구축 장비, 시스템의 운용은 충분한 시험 운영을 거친 후 감독관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2)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기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감독관 입회하에 각 기기의 기능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운영 도중 발견된 장애나 오작동, 미비점에 대해서 "갑"에게 즉시 통보하며, 즉시 수정 보완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을"은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갑"의 각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운용 및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교육 및 운영지원

- 가. "을"은 공급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on-site 교육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갑"이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육 자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교육 장소 및 소요시간 등 기타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제조사 공인교육 5회 이상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다. 교육전산망 회선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전산망에서 매년 제공하는 교육 및 기술지원,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교육전산망 교육 신청이 탈락되더라도 6년 중 2회(1회당 1주 이상, 1회당 2명 이상) 이상 해외 연수와 동일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 1)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본 사업 종료일로 하며, "을"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즉시 무상하자 보증의 책임을 진다.
- 2) "을"은 물품 검수 후 안정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원인 및 조치 내역, 개선 방안, 지연 사유 등을 "갑"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을"은 하자보증기간내에 1명의 인력을 상주 시켜 무선 네트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상주인력의 상주장소와 집기는 협의하여 준비한다.
- 4) 하자 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을"은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을"이 부담변상 조치

- 하여야 한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버전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패치 등의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제한 없이 실시한다.5)
- 5)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해야 한다.
 - 6) "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7) "갑"이 추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 8)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 비용은 "갑"이 지불하며 "갑"이 원할 경우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한 대상 장비만 선정하여 실제 납품 및 설치, 구축한 업체 또는 제조사, 유지보수가 가능한 다른 업체를 지정하여 직접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보안 유지

- 1)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정보(누출금지 정보 포함)나 모든 서류 및 자료 등 일체의 기밀을 계약 기간 및 계약 만료 후(해당 인력의 퇴직 포함)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누출금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a) "갑"의 정보화자원 내·외부 IP Address 현황
 - b) "갑"의 정보화자원 구성 현황 및 구성도
 - c)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갑"의 정보화자원 접근권한 정보
 - d) "갑"의 정보화자원 취약점분석 및 모의침투 결과물
 - e) 해당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f) "갑"의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g) "갑"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 h) 기타 "갑"이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 또는 접근을 제한한 정보
-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갑"의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한 경우, "갑"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 통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을"은 사업 완료 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USB저장장치, 이동식 하드디스크, 노트북 등의 저장매체 내에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하고, 산출물·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 4) "을"이 사업 수행을 위해 반출입한 노트북이나 기타 전산 장비는 반드시 사전에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안 취약점 등을 점검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신규 보안취약점 업데이트, 백신 점검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정보보안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의 보안규정 및 지침,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을"은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투입 인원의 보안교육을 포함한 제반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파.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지적재산권

- 1) 본 사업 수행 중에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산출물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분쟁에 대하여 "갑"을 방어하고 면책하여 "갑"에게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한다. 만일 "갑"이 분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자위책을 행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포함)을 "갑"에게 지급한다.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산출물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이 해당 산출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을"의 비용으로 대체 혹은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대체 혹은 수정된 부분은 이미 공급된 모든 산출물과 기능 및 성능이 동일하거나 높아야 한다.
- 4) 본 조항은 사업이 만료 또는 해제, 해지가 된 경우에도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양도 금지

- 1)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갑"에게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갑"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a)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사업 수행 조건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사업 수행(회선 제공 및 장비 납품, 설치, 공사 등)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갑"의 수정, 보완, 변경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b) "을"이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파산, 회사정리를 당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 c) "을"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당좌거래에 대하여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 d)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축 및 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e) "을"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본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 교육전산망 서비스 약관과 "을"의 서비스 약관 내용이 다르거나 상충되어 문제가 생길 경우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한다
-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또는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을"(또는 "갑")은 의무불이행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전체 및 일부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을"은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을"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계약 시 제출

- 1) 품목별 제조사물품공급확약서 및 제조사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 부
- 2) 납품 장비의 물품 상세 내역, 납품 일정, 세부 작업 공정표 각 1부
- 3) 회선 모니터링 방안 및 체계, 연락처 1부
- 4) 보안서약서(업체 대표 및 투입 인원별, 본교 소정 양식) 1부

- 각 품목별 보안서약서(납품 및 구축 업체)는 계약 후 감독관이 요청하는 일정에 따라 제출 가능

5) 본 시방서 내용과 서비스약관 중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내용 리스트

나. 검수 시 제출

- 1) 제품별 상세 납품 명세서 및 라이선스 1부
- 2)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 현황표(비상연락망 포함) 1부
- 3) 최종 완료 시 모든 항목을 합본하여 최종 검수보고서 제출

5. 기타 사항

- 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을 제공하고 서비스 및 장비의 정상 가동, 공사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을"이 책임을 진다.
- 나. 검수가 완료된 후라도 납품된 시스템이 본 계약 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합의에 따른다.
- 라. 본 사업에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물품 규격 및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과 다른 제품을 설치하였거나 기한 내에 사업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마. 본 사업 또는 시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절차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3.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방법

- 입찰평가 : 본교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선정 방법 등은 입찰참여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입찰가격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 주관적 평가는 삼육대학교에서 "입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별지] 투자장비 제공 내역

1) 기존 장비 시스템 사양

구분	제품명	세부사양
H/W	무선 AP	CISCO, AIR-AP1832I-K-K9 802.11ac Wave 2; 3x3:2SS; IntAnt; K RegDomain
H/W	무선 컨트롤러	CISCO, CON-SNT-AIRT5520 SNTC-8X5XNBD Cisco 5520 Wireless Controller
H/W	무선 인증서버	PPX-AnyLink EntroLinkPPX-AnyLinkv5.0
H/W	무선 스위치	CISCO, WS-C2960X-24PS-L Catalyst 2960-X 24 GigE PoE370W, 4 x 1G SFP, LAN Base
H/W	무선 백본	CISCO, N9K-C93180YC-EX
H/W	무선 방화벽	VForce 2500R NexG Vforece UTM 2500R Base System Mem: 4GB / Console 1 / HDD: 1TB interface: 8port 1Gcombo / Redundant Power Supply

2) 투자 장비 요청 수량

구분	제품명	요청수량
H/W	무선 AP	650대
H/W	무선 컨트롤러	1대
H/W	무선 인증서버	1대
H/W	무선 PoE 스위치	40대
H/W	무선 백본	1대
H/W	무선 방화벽	1대

끝.